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09. 12. 09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 11. 16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9. 11. 19.
- 다. 상정일자 :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(2009. 11. 27)
 - 상정, 심사, 보류
 -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(2009. 12. 09)
 -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강 창 수 가정복지과장

가. 제안이유

구립 마포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운영원칙

청소년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, 지역주민도 이용 가능(안 제4조)

2) 시설의 이용

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구청장이 허락한 자(안 제5조)

3) 사용시간

주간, 야간으로 사용시간을 규정하고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음(안 제6조)

4) 강습료 및 사용료

가)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(안 제7조)

나) 사용료 반환 및 감면 근거규정 제정(안 제7조)

5) 운영의 위탁

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,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■ 본 조례안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「청소년기본법」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,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,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을 하여야 한다”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였는바,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법·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■ 본 조례안 중 조문별로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면, 안 제1조 중 “「청

소년기본법」 제18조, 「지방자치법」은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지방자치법」으로, 안 제2조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는 이하 “구”가 조문에 없으므로 약칭을 삭제하고,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, 제5조의 제목 및 제6조제1항 중 “시설”은 안 제2조에서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”은 “청소년시설”로 약칭을 사용하기로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각각 “청소년시설”로 수정을 요함.

안 제7조의 제목 “사용료 등”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사용한 약칭과 같이 “사용료등”으로 붙여 쓰고, 안 제7조제3항제7호에서 청소년시설 이용자에게 “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”도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에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.

안 제8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,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제3항에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였으므로 “비영리법인” 삭제 및 조문정리가 필요하며,

안 제9조 시행규칙에서 “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른다”고 규정하였으나 “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른다”는 입법 체계상 올바른 표현방식이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